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종합] 공모계획안 및 공모요강

1. 공모개요

가. 사업명 :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종합]

- 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 3) 유아문화예술교육
- 4) 장애인문화예술교육
- 5)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나. 대 상 : 도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

※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은 다를수 있음

다. 공모 및 접수기간 / 심사 및 발표

사업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 및 접수기간	공모기간	20. 1. 13.(월) ~ 1. 31.(금)	공모기간	20. 1. 13.(월) ~ 2. 17.(월)
	접수기간	20. 1. 15.(월) ~ 1. 31.(금)	접수기간	20. 2. 3.(월) ~ 2. 17.(월)
심사 및 발표	심사기간	20. 2. 3. ~ 2. 23.(예정)	심사기간	20. 2. 18. ~ 2. 26.(예정)
	결과발표	20. 2. 24. ~ 2. 29.(예정)	결과발표	20. 2. 27. ~ 2. 29.(예정)

※ 접수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

2. 사업설명회 개최

가.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내 용		
권역명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시
사업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유아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일 시	20. 1. 16.(목) 16:00~18:00	20. 1. 17.(금) 16:00~17:00	20. 1. 17.(금) 19:00~21:00
장 소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서귀포시 중앙로 105)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실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제주문화예술재단 지하 1층 회의실 (제주시 동광로 51)

※ 공모 진행상황에 따라 장소 및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Contents

I.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사업 한눈에 보기

- 1.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방향 3
- 2.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사업유형 4

II. 2020년 지원사업 공모요강

- 1. 개요 5
- 2. 상세유형 6
- 3. 공통사항 6

III. 심사 및 선정

- 1. 공모심사 10
- 2. 심사 10
- 3. 심사 시 고려사항 11

IV. 점검사항 12

V.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 1. 신청사항 13
- 2. 제출서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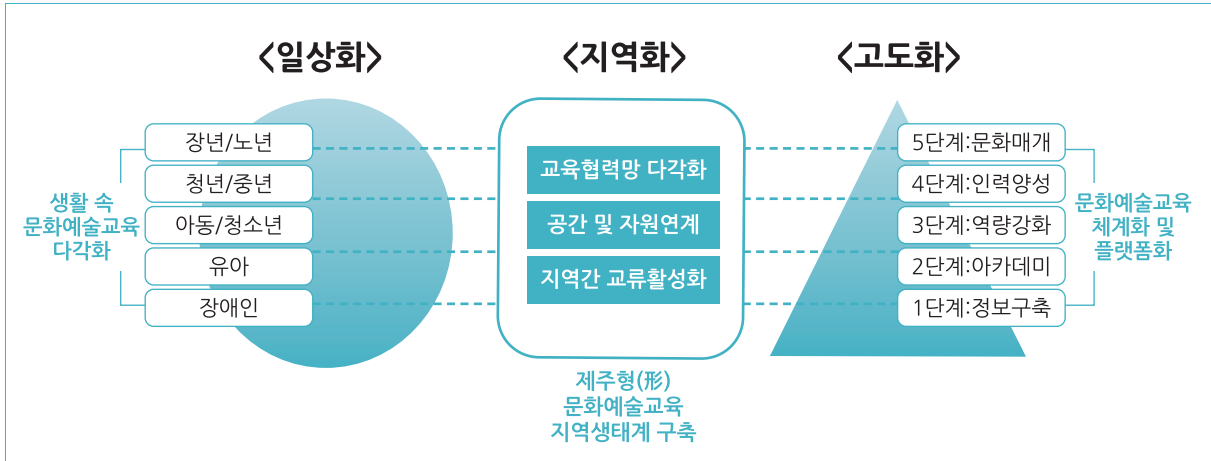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종합] 세부 사업별 안내사항

- 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6
- 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18
- 3. 유아문화예술교육 20
- 4. 장애인문화예술교육 21
- 5.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22

I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사업 한 눈에 보기

1.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방향

- 문체부 및 제주특별자치도『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제주문화 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추진



정책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내용
일상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교육·다양화 •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별·계층별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유아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역화	협력 네트워킹	지역거점조성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역생태계 구축 • 지역중심 거점·협력망으로 교육환경 조성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산·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인식·가치 확산	프로그램 보급사업	
		가치확산 캠페인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 문화예술교육 체계화 및 플랫폼화 • 문화예술교육기반 고도화 및 문화인력양성 • 문화예술교육 질적성장과 문화전문인력 양성·연결 및 교육콘텐츠 플랫폼 강화
		문화예술교육인력 연수사업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	자율연구모임	
		창의예술교육랩(19년)	

2.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유형

구분	사업유형	설명
공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공모를 신설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연속(다년)지원 유형화 • 19년 대비 예산증액(515백만원 → 550백만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공모를 신설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연속(다년)지원 유형화 • 19년 대비 예산증액(190백만원 → 350백만원)
	유아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유아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문화시설 공모선정 • 연수프로그램 공모제외
	장애인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회차 조정,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참여필수 • 19년 대비 예산증액(230백만원 → 245백만원)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 만 39세미만 → 만 39세이하 • 4대보험료 중 기관 부담금 협의후 지원가능
기획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후 사업별 별도 안내예정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사업(디딤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사업(육교)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사업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 캠페인사업	

II 2020년 지원사업 공모요강

1. 개요

- 신청대상 : 도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
※ 단,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를수 있음
- 사업유형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유아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 공모 및 접수기간 / 심사 및 발표

사업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 및 접수기간	공모기간	20. 1. 13.(월) ~ 1. 31.(금)	공모기간
접수기간		20. 1. 15.(월) ~ 1. 31.(금)	접수기간	20. 2. 3.(월) ~ 2. 17.(월)
심사 및 발표	심사기간	20. 2. 3. ~ 2. 23.(예정)	심사기간	20. 2. 18. ~ 2. 26.(예정)
	결과발표	20. 2. 24. ~ 2. 29.(예정)	결과발표	20. 2. 27. ~ 2. 29.(예정)

※ 접수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

- 정산기간 : 공모사업의 경우 교육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10일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정산시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로 제출해야 함
 -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시스템의 '내정보방'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업데이트 필수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사업신청서 첨부자료
 - 지원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양식이 다르므로 지원 사업 안내를 사전에 확인
 - 기간 내 첨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관련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064-800-9177(꿈다락·지역특성화) / 9171(장애인, 유아) / 9173(인턴십)
 - 방문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 주소 : (63196) 제주도 동광로51(이도일동), 8층 문화예술교육팀

2. 상세 유형

○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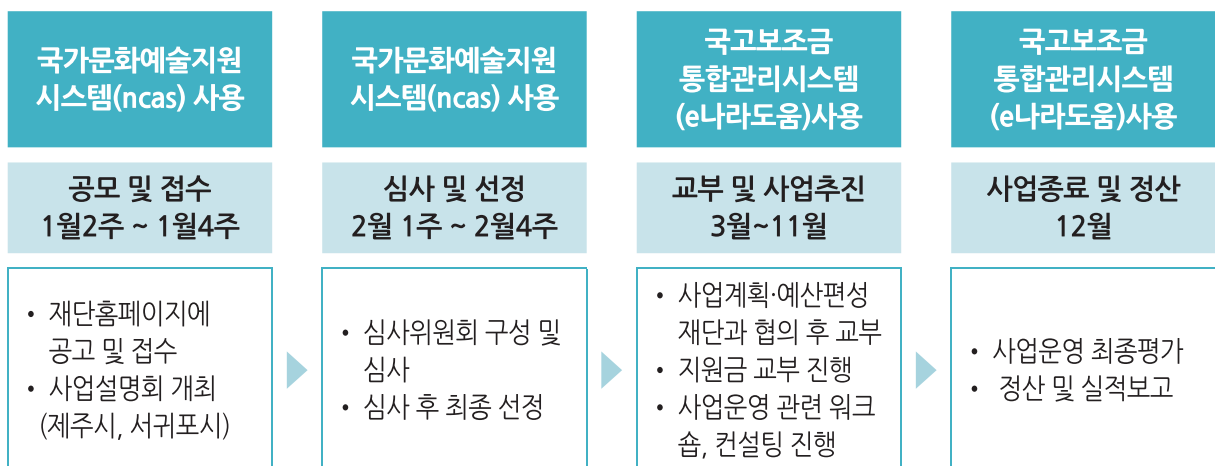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수	교육(수혜) 대상	지원(신청) 대상			비고
				단체	시설	기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당 2~4천만원	21건 내외	아동·청소년 및 가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모 2천만원이내 (단년지원) • 기획공모 4천만원이내(다년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건당 2~4천만원	14건 내외	일반도민 (아동·청소년 제외)	●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건당 1~2천만원	17건 내외	장애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1년이상 운영 실적 필수
유아 문화예술교육	건당 3~4천만원	5건 내외	영·유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기관의 경우 시설과 협약후 참여가능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건당 인건비/ 프로그램비	3건 내외	문화예술 교육사 (만 39세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기관의 경우 시설과 협약후 참여가능

※ 사업유형당 지원예산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

※ 각 지원유형별 심사과정에서 적정 대상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3. 공통 사항

○ 공모절차



※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전액 도비 사업이므로 교부 및 사업추진 단계의 e나라도움 시스템 미사용

○ 보조금 신청·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기일 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사업자의 신청내용이 예산 편성한 내용과 일치하여야만 전액 교부할 수 있으며, 전제 조건이 미충족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값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비 회계처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회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목적 외 집행불가** :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한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매입비, 직원 인건비, 문화예술 교육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
 -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의비의 경우,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함

○ 보조금 가이드

- 지원 선정이후 재단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에 따라 교부·집행·관리·정산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 보조금 교부신청 이후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반드시 변경하기 이전 재단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 변경 신청내용이 당초 기대한 사업성과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립된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하며, 전체적 기획의도 변경 및 빈번한 계획변경 지양
- 변경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

※ 주요 사업계획 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1)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메일 송부 후 자체 변경 가능한 항목

- 참여인력 중 보조강사, 특강강사의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변경

2) 공문을 통한 변경 요청 및 승인 필요 항목

- 참여인력 중 주강사, 기획자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향유기관 변경
- 학습대상 변경(예시:노인→장애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제시 필수)

○ 중도 사업포기

- 지원사업 확정된 자가 공고 후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기간 이후로 중도 사업포기를 할 경우 내년도 동일한 지원사업에 지원신청 불가

○ 컨설팅 등 사업관리

- 사업 관리 차원에서 평가(성과평가 및 운영현황 평가 등) 및 현장 모니터링 진행(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 운영 현장 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는 본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도출, 궁극적으로 지속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조 필수
- 지원선정 단체의 경우 컨설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관련 워크숍(역량강화, 성과공유 워크숍 등) 및 컨설팅 진행 시 필수 참석

○ 지원신청 부적격

- 지원신청 부적격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하고 '0'점 처리하며, 지원 결정 후 발견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준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선정이후 교부/정산 워크숍 진행시 참여 필수

○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단체·시설·기관 ※ 개인 불가
- 단체 및 시설,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시설·기관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지원신청 부적격

- 국립, 시립문화예술기관(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시설·기관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 친교기관 등 이들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단체·시설·기관
- 일반 성인 및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시설·기관
-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단체·시설·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시설·기관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시설·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12.20.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시설·기관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시설·기관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시설·기관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시설·기관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 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시설·기관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시설·기관 또는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금년도 1월)을 초과한 단체·시설·기관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단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연장한 경우 예외로 함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시설·기관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Ⅲ 심사 및 선정

1. 공모심사

○ 심사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구분	대상	내용
1차 서류심사	공모 신청 단체	- 필수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서류 미비 단체 탈락 - 공모신청서 서류심의 ※ 사업내용 부실, 자료 신뢰성 부족, 지원 부적격, 배재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단체 탈락
2차 인터뷰 심사	공모 신청 단체	- 프로그램 이해도, 사업실현 가능성 등 내용파악 - 최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컨설팅 참석자: 사업 총괄 책임자 (협력기관 있는 경우 동반 참여 권장) ※ 인터뷰심사 미참석 단체 탈락
선정공고	최종 선정단체	- 선정 리스트, 총평, 확정예산 센터 홈페이지 공고
기획 워크숍	최종 선정단체	- 컨설팅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 보완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 (미 반영시 선정 취소)
	미선정 단체	- 사전 참여 신청 후 심사 결과 공유 및 컨설팅 진행

2. 심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심사기준

심사영역	세부영역	심사지표	배점
추진역량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 실적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협력네트워크 추진 능력	25
추진계획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 - 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가 - 참여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성여부	25
	교육대상	- 교육대상의 특성 및 수요의 반영도 - 참여자 모집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 -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등 관리 방안 수립 여부	25
	교육운영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 교육공간의 안전관리계획, 교육 활동 공간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지 여부 - 전년도와 동일 프로그램인 경우 교육과정 및 내용의 전년대비 개선사항,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전환 혹은 차별화 여부	25
합계			100

○ 유아문화예술교육 심사기준

심사영역	세부영역	심사지표	배점
추진역량	전문성	- 유아문화예술교육 주요활동 실적 - 참여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 문화예술분야 활동실적	25
		추진계획	콘텐츠
교육장소	- 대상자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공간 확보 여부 - 안전관리계획, 교육활동 공간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25
교육운영	- 프로그램 참여한 구성 및 역할분담 -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집행가능성		20
합 계			100

○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사업 이해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도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 운영기관에서 설정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목적의 적합성	30
운영계획의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조건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40
관리방안의 체계성	-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및 모집 계획의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사 근무환경 구축 및 인력관리의 구체성	30
합 계		100

3. 심사 시 고려사항

○ 심사위원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타 시·도) 심사위원도 포함하여 구성
- 심사위원 책임성 강화 위한 「보안 및 공정 심사 서약서」, 「심사회피신청서」 모두 요청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탈락처리 됨
- 각 사업유형별 제출서류 미비시 탈락 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선정 후 제출서류가 허위 및 날조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취소 및 지원금반환, 내년도 동일한 유형의 지원 사업 지원불가

IV 점검사항

유의사항

구분	시점	유의사항
1	공모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은 구체적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 미비시 심사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 확정 공고 후 30일 이내 사업포기신청서 제출시 정당사유로 사업포기하였음을 인정함
2	교부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작 전 지원금 전용통장 및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항목의 예산도 보조금 교부 전에 집행하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교부 신청서 제출 시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3	사업진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함 ○ 사업비를 통한 물품 구입 및 대금 결제 건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현금지출 불가)
4	정산처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실적보고서 계좌통장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의 사본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정산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한 정산자료는 해당 지원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보관 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단, 교부신청시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은 체크카드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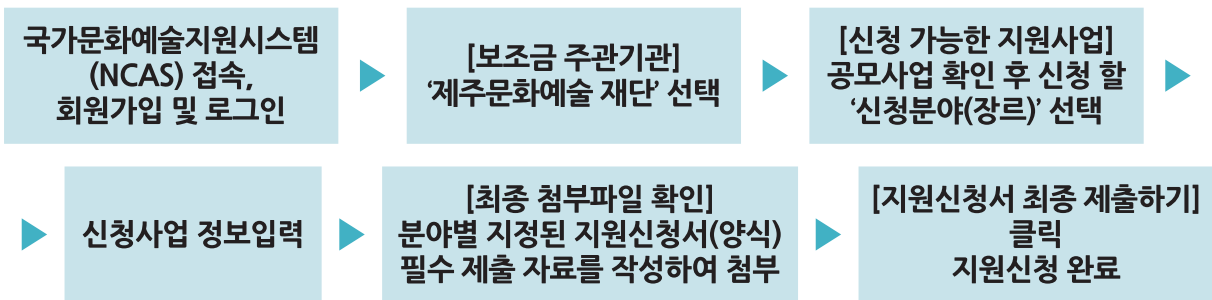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소모품(교육기자재/약기, 이젤 등) 구입 불가(기자재는 대여하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자산(컴퓨터 및 프린트 등) 취득, 대여 불가
- 장비·소품 임차 등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 지원금 집행 불가
- 시혜성 물품 구입 집행 불가(강사 및 수혜자에게 사례성 선물 및 문화상품권 등)
- 회의비, 다과비 과다 지출 및 유흥업소(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불가)에서의 회의비 집행 불가
- 일상 운영경비 집행 불가(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내부거래의 건(참여인력 혹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불가, e나라도움시스템 부정수급 목록 확인 가능하며 해당액 반환)
- 강사에게 강사로 외의 인건비 지급 불가
(예시: 자체 현수막 제작으로 인건비 지출, 공연 및 전시 보조인력 수당 지출 등)

V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1. 신청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외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단체 지원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 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함(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 요망
 - 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는 심사 배제처리 됨
 - ※ 첨부파일(지원신청서 등),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 손상된 경우보완 요청한 당일 제출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재확인 요망



2. 제출서류

- 각 사업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별도 첨부 서류 양식 작성 시 세부 확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방식
공모지원 신청 관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교육협력 및 참여확인서	원본제출	출력 후 직인 및 서명 날인하여 PDF 파일 첨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선정단체(기관) 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한글파일 첨부 ※PDF변환 금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제출		파일 첨부
활동증빙자료	포트폴리오, 음원, 사진 등		파일 첨부

※ 별도 지정양식 첨부필수 및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 (별도 제출 불가)

<위 사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안내

20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종합) 세부 사업별 안내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Tel. 064.800.9177, 9171, 9173 Fax.064.800.9106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 e나라도움 상담센터
1577-8751, 1670-9595

- ※ 재공모 또는 추가공모가 있을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예정
- ※ 세부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본 공모요강 안내서에 빠져있는 지침내용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추가고지 또는 별도 안내 예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따라 우리 재단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우리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또래, 가족 간 소통 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교육기간 : 3월 ~ 11월)

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개인 불가)
- 단체 및 시설,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지원범위

- 일반공모 : 2,000만원 이내
- 기획공모 : 4,000만원 이내

지원내역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획자 및 강사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공모세부내용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지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 기관 · 시설	
수혜 대상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아동 및 청소년 ※가족 대상 제외
지원 목적	• 또래 및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체험/탐구/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및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아동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또래들과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예술로 건전한 일탈을 즐기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규모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 4천만원 이내
지원 기간	단년도 지원	최대 2년 연속지원
교육 회차	최소 30회차 이상	1년차: 최소 20회차 이상 2년차: 최소 25회차 이상
지원 내용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인문 등 문화예술 소양 함양 프로그램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상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 문화예술 소질 개발, 진로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계획 필수 포함 - 1년차: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 2년차: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여름 방학기간 활용 필수 (방학기간 주중 운영 가능) • 여행 및 캠프 방식 적극 활용(도외 불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강의, 반복성 프로그램 및 일회성 체험, 실기위주 교육 지양 • 단체의 예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의 사업목표 및 교육 대상과의 연계성을 지켜야 함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넷째주)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사업 진행 시 프로그램 아카이빙(사진, 영상 등) 필수, 정산 시 아카이빙 자료 제출 필수 • 기획공모 신청자 중 기획공모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요건에 따라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조건부 선정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교육협력 및 참여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선정단체(기관) 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제출 형태 및 방식, 세부내용은 위의 [V.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항목 참조)

참고사항

- 지원양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개 - 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무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가입 필수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리치(www.아트리치.kr)’에 가입필수 및 지원사업 홍보물 게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표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 100만원 예산 편성 및 참여 필수
- 역량강화비 100만원 편성 필수
-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교육기간 : 3월 ~ 11월)

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개인 불가)
- 단체 및 시설,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지원범위

- 일반공모 : 2,000만원 이내
- 기획공모 : 4,000만원 이내

지원내역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기획자 및 강사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공모세부내용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지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 기관 · 시설	
수혜 대상	제주도민 ※아동·청소년 제외	
지원 목적	•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 규모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 4천만원 이내
지원 기간	단년도 지원	최대 2년 연속지원
교육 회차	최소 30회차 이상	1년차: 최소 20회차 이상 2년차: 최소 25회차 이상
지원 내용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술가와 마을주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계획 필수 포함 - 1년차: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 2년차: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여행 및 캠프 방식 적극 활용(도외 가능)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생활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단순 강의, 반복성 프로그램 및 일회성 체험, 실기위주 교육 지양 • 단체의 예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사업 목표 및 교육대상과의 연계성을 지녀야 함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넷째주)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사업 진행 시 프로그램 아카이빙(사진, 영상 등) 필수, 정산 시 아카이빙 자료 제출 필수 • 기획공모 신청자 중 기획공모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요건에 따라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조건부 선정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교육협력 및 참여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선정단체(기관) 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제출 형태 및 방식, 세부내용은 위의 [V.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항목 참조)

참고사항

- 지원양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개 - 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무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가입 필수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리치(www.아트리치.kr)’에 가입필수 및 지원사업 홍보물 게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표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 공동사업비 100만원 예산 편성 및 참여 필수
- 역량강화비 100만원 편성 필수
-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역내 문화시설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교육기간 : 3월 ~ 11월)

신청자격

- 제주도내 문화시설

- ※ 문화시설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 시설, 도서관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유아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

- 예술단체의 경우에도 공모지원이 가능하나,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 필수
 -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단체와 문화시설의 업무협약서 필수 제출

지원범위

- 최대 4,000만원

지원내역

- 영·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기획자 및 강사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교육협력 및 참여확인서(문화시설과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협약서 필수)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선정기관(시설) 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제출 형태 및 방식, 세부내용은 위의 [V.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항목 참조)

참고사항

-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기간 및 단가는 재단에서 일괄하여 정함
- 지원양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개 - 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시설당 7개이상 영유아기관 모집원칙 (단, 선정이후 지역특성에 따라 재단과 별도 논의)
- 영유아 기관당 4회차 이상 진행하되, 최소 1회는 선정된 문화시설내에서 프로그램 진행

의무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가입 필수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리치(www.아트리치.kr)'에 가입필수 및 지원사업 홍보물 게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표기
 - 심사이후 개최하는 기획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하며 컨설팅 내용 미반영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음
 -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 공동사업비 100만원 예산 편성 및 참여 필수
 - 역량강화비 100만원 편성 필수
-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 12월(교육기간 : 3월 ~ 11월)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이 1년이상 있는 장애인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비영리단체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000만원
지원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기획자 및 강사비,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교육협력 및 참여확인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선정기관(시설) 및 단체 정보 참여인력 이력서 <p>(※ 제출 형태 및 방식, 세부내용은 위의 [V.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항목 참조)</p>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문화예술단체와 컨소시엄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나 책임기관은 장애인문화예술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가 되어야하며 업무협약서 제출 필수 지원양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제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개 - 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가입 필수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리치(www.아트리치.kr)'에 가입필수 및 지원사업 홍보물 게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표기 심사이후 개최하는 기획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하며 컨설팅 내용 미반영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음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 공동사업비 100만원 예산 편성 및 참여 필수 역량강화비 100만원 편성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실무경험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시설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인턴 채용·프로그램 운영기간 : 3월 ~ 12월)
- ※ 인턴 채용·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최소 6개월~최대10개월이며, 채용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을 우선 고려하며, 도내 소재 문화시설도 신청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선발
 - 대상 : 만 39세 이하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후 3년 이하인자 우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의무배치 기관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문화시설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 시설, 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

지원범위

- 최대 3,090만원

지원내역

- 인건비 : 1인당 월 환산액 2,090,000원(시간급 10,000원)*10개월
- 기획·운영비 및 기관부담금 : 최대 1천만원(기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 선정시설의 4대 보험료 중 기관 부담금의 지원여부는 재단과 협의 후 결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선정기관(시설) 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 (※ 제출 형태 및 방식, 세부내용은 위의 [V.신청사항 및 제출서류] 항목 참조)

참고사항

- 지원양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개 - 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근무 기간은 근무시작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되,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0개월까지 근무 가능

의무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가입 필수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리치(www.아트리치.kr)’에 가입필수 및 지원사업 홍보물 게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표기
- 추후 사업 수행시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